

CEO안심상해보험 II (무배당)(26.05)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선택!

한달에
3만원으로 불의의
상해사망사고시!

매월 200만원씩
10년간 생활지원금을
드립니다

[일반상해사망 가족생활지원금(10년매월지급형)
[월지급플랜 : 10년납 15년만기, 상해금, 월 30,000원]

총 2억 4천만원

일반상해사망 가족생활지원금(10년매월지급형)
[월지급플랜, 가입금액 200만원시]

사고발생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적립보험료 납입중지
[단, 일반상해 80%이상 후유장애발생시]



사고 피할 수는 없어도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상품특징



- ① 금리고정형 2.75%로 만기환급률 변동 걱정 No!
[CEO플랜(금리고정형)가입시, 세전기준]



- ②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발생시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 적립보험료 납입 중지

가입안내



| | |
|------|--|
| 보험기간 | 3년, 4년, 5년, 7년, 10년, 15년 |
| 납입기간 | 2년, 3년, 4년, 5년, 7년, 10년, 15년 |
| 납입방법 | 월납 |
| 가입유형 | CEO플랜(금리고정형), 실속플랜(금리연동형), 월지급플랜(금리연동형) |
| 가입나이 | CEO플랜(금리고정형) 보험나이 20세~70세 실속플랜(금리연동형) 보험나이 20세~70세 월지급플랜(금리연동형) 보험나이 20세~65세 |
| 적용이율 | [보장부분] 2.75% [적립부분] • CEO플랜(금리고정형) : 2.75%(고정금리) • 실속플랜(금리연동형), 월지급플랜(금리연동형), : 보장성-1701 공시이율(매월변동) |

※ 플랜에는 대표플랜 예시입니다. 다른 플랜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영업점에 문의바랍니다.

사고로 인한 가장의 부재와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가족의 행복을 지켜드립니다

보장내용 및 보험료예시

※ 대표플랜 예시입니다.



CEO플랜(금리고정형)

가입나이 : 보험나이 20세~70세
 납입기간 / 보험기간 : 2,3,4,5년납 / 3,4,5년만기

기준 : 상해1급, CEO플랜(금리고정형), 3년납 5년만기, 여자 40세, 단위 : 원

| 담보명 | 가입금액 | 담보별 보험료 |
|-------------------------------------|-------|---------|
| 일반상해사망후유장애(20~100%) (가입금액 × 장애율) | 100만원 | 27 |

[보장보험료 : 27원 / 적립보험료 : 29,973원 / 합계보험료 : 30,000원]

※ 일반상해사망후유장애(20~100%)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하거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애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20~100% 장애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애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 ※ 상해담보 가입시,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직업/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을 하던 중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예시

기준 : 상해1급, 월 30,000원 수준, 단위 : 원

| 구분 | 3년납 5년만기 | |
|-----|----------|--------|
| | 남자 | 여자 |
| 30세 | 30,000 | 30,000 |
| 40세 | 30,000 | 30,000 |
| 50세 | 30,000 | 30,000 |

※ 위 플랜 담보가입 금액 기준보험료 예시로, 보험료는 성별, 연령, 가입금액,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상해 1급, CEO플랜(금리고정형), 3년납 5년만기, 여자 40세, 월 30,000원, 단위 : 원

| 경과 기간 | 납입 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 평균공시이율 | | 적용이율 | |
|--------|-----------|-----------|--------|-----------|-------|-----------|--------|
| |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 1년 | 360,000 | 291,064 | 80.9% | 290,626 | 80.7% | 291,064 | 80.9% |
| 3년 | 1,080,000 | 1,017,512 | 94.2% | 1,013,635 | 93.9% | 1,017,512 | 94.2% |
| 5년(만기) | 1,080,000 | 1,080,000 | 100.0% | 1,070,716 | 99.1% | 1,080,000 | 100.0% |

※ 위 '적용이율시'의 예상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적립부분 적용이율(2.75%), 평균공시이율(2026-05 기준 연 2.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 향후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 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중도인출 가능 상품의 경우 중도인출액 포함)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발생하는 예상환급금은 적용이율(2.75%)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평균공시이율로 부러진 예상환급금은 비교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위 표의 만기환급금은 만기유지환급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만기유지환급금은 만기유지환급금 적용대상 총족시 만기시점에 만기유지환급금을 지급하며 적용대상 미총족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도성 특별약관(장기보장성보험 적립부분 만기유지환급금 제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및 보험료예시

※ 대표플랜 예시입니다.



월지급플랜(금리연동형)

가입나이 : 보험나이 20세~65세

납입기간 / 보험기간 : 3,5,7,10,15년 / 15년만기

기준 : 상해1급, 월지급플랜(금리연동형), 10년납 15년만기, 여자 40세, 단위 : 원

| 담보명 | 가입금액 | 담보별 보험료 |
|------------------------------------|--------------|---------|
| 일반상해사망 가족생활지원금 (10년 매월지급형) | 200만원 × 120회 | 2,460 |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애 생활지원금 (10년 매월지급형) | 100만원 × 120회 | 320 |
|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애 생활지원금 (10년 매월지급형) | 20만원 × 120회 | 110 |
| 일반상해후유장애(20~79%)(가입금액 × 장애율) | 5,000만원 | 550 |
| 상해수술비(매 사고시 마다) | 10만원 | 305 |

[보장보험료 : 3,745원 / 적립보험료 : 26,255원 / 합계보험료 : 30,000원]

※ 일반상해사망 가족생활지원금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한 경우(매월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년간 확정지급(120회))(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 일시지급 가능)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애생활지원금 : 보험기간중 상해로 장애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80%이상 후유장애시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을 10년간 확정지급(120회)) (최초1회에 한함)[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 일시지급 가능] ※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애생활지원금 : 보험기간중 상해로 장애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50%이상 후유장애시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을 10년간 확정지급(120회)) (최초1회에 한함)[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 일시지급 가능] ※ 일반상해후유장애(20~79%)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20~79% 장애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을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상해수술비 : 보험기간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 상해담보 가입시,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직업/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을 하던 중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예시

기준 : 상해1급, 월지급플랜(금리연동형), 단위 : 원

| 구분 | 10년납 15년만기 | |
|-----|------------|--------|
| | 남자 | 여자 |
| 30세 | 30,000 | 30,000 |
| 40세 | 30,000 | 30,000 |
| 50세 | 30,000 | 30,000 |

※ 위 플랜 담보가입 금액 기준보험료 예시로, 보험료는 성별, 연령, 가입금액,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상해 1급, 월지급플랜(금리연동형),

10년납 15년만기, 여자 40세, 월 30,000원, 단위 : 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 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 | |
|---------|-----------|-----------|-------|---------------|-------|
| |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 1년 | 360,000 | 142,349 | 39.5% | 144,376 | 40.1% |
| 3년 | 1,080,000 | 758,634 | 70.2% | 776,205 | 71.9% |
| 5년 | 1,800,000 | 1,377,259 | 76.5% | 1,426,100 | 79.2% |
| 10년 | 3,600,000 | 2,862,506 | 79.5% | 3,062,386 | 85.1% |
| 15년(만기) | 3,600,000 | 2,741,938 | 76.2% | 3,155,420 | 87.7% |

※ 위 '적용이율시'의 예상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공시이율(2026-01 기준 연 1.60%), 평균공시이율(2026-05 기준 연 1.60%)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 공시이율[보장성-1701]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예시된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시이율[보장성-1701]는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중도인출 가능 상품)의 경우 중도인출액 포함이 기납입보험료로 보다 큰 경우 동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표의 만기환급금은 만기유지환급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만기유지환급금은 만기유지환급금 적용대상 충족시 만기시점에 만기유지환급금을 지급하며 적용대상 미충족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도성 특별약관(장기보장성보험 적립부분 만기유지환급금 제도성 특별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실 사항



상품에 대한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무효(상해·질병보험)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상해·질병보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의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상해·질병보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상해보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연체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의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의 철회할 수 없습니다.

판매사



판매 금융기관보험대리처 : 하나은행(2003091001)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자가 청약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승환계약 안내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써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사항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세제안택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의 재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안내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or.kr)내 보험사기신고

보험상당 및 보험 분쟁 조정 안내

보험상당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방카슈랑스 고객컨택센터(1544-01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www.fss.or.kr)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무 수행관련 고지사항

애당 모집중사자는 다수의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애당 모집중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KB손해보험 및 모집중사자는 애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역삼동) www.kbinsure.co.kr
KB손해보험 방카슈랑스콜센터 : 1544-0116

제작부서 : 방카슈랑스사업부 | 제작일자 : 2026. 5. 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1092호(2026.04.28~2027.04.27)